

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총무 이동의 신부

‘생명의 신성함’ 윤리와 ‘삶의 질’

'The Sanctity of Life' Bioethics and
'the Quality of Life'

2005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’ 제22조는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. 뿐만 아니라 이 법률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이 법률의 목적은 법률의 명칭과는 전혀 동떨어진 ‘생명과 학기술이 인간의 질병치료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개발,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’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.

오늘날 ‘삶의 질’ 개념은 이처럼 국가의 법률에서도 하나의 기준이 되어 버렸고, 이는 시민의 삶 속으로 더욱 확대되어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.

그러나 ‘삶의 질’ 개념은 ‘질’ (Quality)이라고 하는 수치적 차이를 표현하는 지표가 가치를 평가한다는 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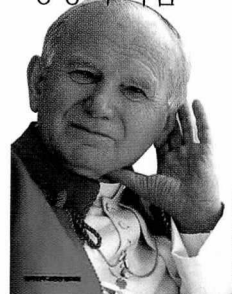
에 그 오류가 드러난다. 마치 어떤 생명은 더 높은 질을 지니고, 또 어떤 생명은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.

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른바 ‘삶의 질’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경제적 효율성, 무절제한 소비주의, 육체적 아름다움과 쾌락으로 해석하고 있으며, ‘삶의 질’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될 때 인간 상호간의 영적, 종교적 차원과 같은 실존의 더 심오한 차원들은 무시된다고 경고한다.(EV, 23항)

‘삶의 질’을 강조할 때 모든 인간 생명이 지니는 존재론적 가치를 간과하게 될 것이고, 한 생명의 가치를 판단하고 생명의 순위를 설정하려는 오류에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.

‘삶의 질’을 강조할 때 모든 인간 생명이 지니는 존재론적 가치를 간과하게 될 것이고, 한 생명의 가치를 판단하고 생명의 순위를 설정하려는 오류에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.

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
생명의 복음



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회칙 ‘생명의 복음’